

## 서울특별시마포구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 에대한종합토지세율균일화세에관한조례증개정조 례(안)

서울특별시마포구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  
에대한종합토지세율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 다음  
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중 “지적고시된 후 5년이 경과됨”을

“지적고시된 토지와 철도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등이 제한된”으로 한다.  
부칙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시설한다

②(적용시한) 이 조례는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994년12월31일까지 적용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1992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부대비표

서울특별시마포구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구세의  
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(안)

서울특별시마포구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구세의과  
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 
개정한다

제2종제1항제1호를 삭제하고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1호 및 제2호로 한다.

부칙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(적용시한) 이 조례는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99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.

부 칠

이 조례는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·국조문대비포

현 행	개 정 안
제 2 조(과세면제) ① 구세의 과세면제대상은 다음과 같다.	제 2 조(과세면제) ① ..... ..... (삭제)
<u>1. 사업소세</u>	
<u>마을공동경영사업장</u>	
<u>2.-3.(생략)</u>	1.-2.(현행 제2호 및 제3호와 같음)
②(생략)	②(현행과 같음)